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52008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등 2015나52015(병합)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redacted]조합 4. D 5. E 6. F 7. G 8. H 9.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가단220858, 2014가단62113 (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5. 11. 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3. 6. 26.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 [redacted]조합, D, E, F,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G, H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6. 27. 접수 제159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가단97238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2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김신영

판사 전경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2

[별지]

부동산 목록

1. [redacted] [redacted]군 J 디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경량철골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34.10㎡

2층 50.04㎡

(일반건축물대장상의 표시 : [redacted] [redacted]군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35.36㎡

2층 50.04㎡), 끝.